

[사 건 명] 행심 2019 - 43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록별로 각각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경 전직교사로서 폭력관련 심의대상자로 지정되어 심의 후 해직되었으며 청구인은 당시 징계를 받게 된 증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8. 12. 14.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27.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 및 청구인에게 처분 사항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함)하였으며(*관련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호 및 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교

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19조) 이에 청구인은 2019. 1. 2. 청구인은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알고, 2019. 3. 8.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본 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주장한다.

1. 청구인이 2009. 3. 26.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징계 관련 자료를 정보 공개 요청한 것은 타인을 해할 목적이 아닌 징계 당사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청구인은 징계심의회의에서 심의요구 의결서 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서 이미 민원인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아닌 징계에 대한 증거자료, 즉 징계절차의 적법 절차와 적정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한 것이다.

2.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에 따르면 정보 공개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비공개처분을 내릴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단순한 법률 조항만을 언급하면서 비공개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6호에 의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나, 오히려 동법 단서 조항에는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는 부당하게 해임된 청구인의 복직할 권리에 관한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4.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목록 중 증거품에 대한 5번, 10번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15번 회의록은 청구인의 참석 하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청구인 사이의 문답 등 징계절차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한다

하여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의가 종료되어 모든 처분이 완료된 이후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 처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피청구인이 비공개 처분 근거로 적시한 민원처리법 제7조의 규정은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의 업무상 주의사항 및 노력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만약 이를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보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6.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 목록 중 심의 회의록은 오히려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이른 정확한 취지가 공개되어야 함이 공익을 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한 것은 정보공개로 얻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간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7.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이 원칙인 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피청구인은 인적사항 등을 가린 채로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8. 청구인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해임사유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들이 실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묻고 있는 것이며, 만약 실존하지 않는 증거들로 당시 청구인을 해임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를 밝히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이며, 이는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수적인 절차이다.

9. 해임적격에 관하여 다투는 소송은 모두 확정된 것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으며, 청구인은 기

존 해임적격에 관한 소송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증거들을 피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어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것이다.

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 요청한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오히려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에 협조할 의무가 있고,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정보공개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민원처리법의 경우 민원처리자의 업무상 주의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공개처분을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가린 채 부분공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보에 대해 모두 공개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부적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정보공개 요청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에 대한 정보가 민원인들에 대한 보복 등 타인을 해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개인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이는 관련 법률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공개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따로 관련 규정을 두어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동법 제9조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살펴보면 비공개 결정함을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 법률 규정을 적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 않고 어떠한 법익 혹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여 관련 법률을 적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참고로 대법원 판례(2007. 2. 8. 선고 2006두4899) 역시 행정정보의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비공개처분을 결정하였다면 적법한 처분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고, 이는 반대로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되며,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 중 개인의 징계에 관한 내용(△△△ 학생 징계관련 내용), 학부모의 진정서 내용, 학생이 직접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항의 쪽지에 대한 내용, 개인의 문답서, 개인의 진정서 내용들은 모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내용들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의 정보이다.

6. 청구인은 개인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고 하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해임 처분은 2009년경에 이루어졌고 이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청구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이 얻을 수 있는 권리구제는 불확실한 반면 정보공개를 하였을 경우 관련 개인의 정보 혹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는 크므로 둘 사이의 이익을 비교, 형량 하더라도 비공개 처분을 함으로써 얻는 공익상의 이익이 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7. 2009년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권리 불복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밟기에는 그 기간이 훨씬 초과한 상황이며, 가사 해임 처분에 있어 취소가 아닌 무효를 확인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처분에 있어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권리 구제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반면 정보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 혹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점,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공개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2. 판 단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피청구인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1) 이 사건 청구인은 1985. 12. 2.경부터 사립학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1994. 3. 1. 공립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되었고, 청구인이 2006. 3. 1.부터 ○○○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수업태도불량, 학생체벌, 동료교사 폭행 등을 이유로 □□시 교육감으로부터 2009. 5. 14.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7. 20.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소청심사청구가 기각되자, 이후 □□지방법원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임처분의 부당함을 다투었으나, 결국 위 소송 제1심에서 청구인은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 제기까지 하였으나, 결국 위 소송은 청구인의 패소로서 2011. 10.경 확정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8. 12. 14.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2. 27.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 및 청구인에게 처분 사항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9. 1. 2. 청구인은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이 있음을 알고, 2019. 3. 8.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본 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함)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

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느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 8827 판결 참조)

(2) 한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해 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록(=이하 ㉠ 내지 ㉞항 등 16개항목)은 아래와 같다.

㉠ ○○○○○청의 공문서 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징계자료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학교 진정민원관련 추가 자료제출(2009. 2. 10.) 목록 1. ‘○○○ △△△ 학생 징계관련서류 사본’에 대한 그 내용과 조사자료

㉡ ○○○○○청의 공문서 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징계자료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학교 진정민원관련 추가 자료제출(2009. 2. 10.) 목록3.과 관련 ♥♥♥ 고충심사청구서 내용과 학부모의 진정서 내용 중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는 부분에 관한 조사자료와 조치사항

㉢ ○○○○○청의 공문서내용 중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임 증거자료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학교 진정민원관련 추가 자료 제출(2009. 2. 10.) 목록5. ‘교장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제출한 교사 ◇◇◇에 대한 항의쪽지 등’에 대하여 제출한 항의쪽지 내용과 이에 대하여 확인된 조사자료

㉔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임 증거자료로 부적격교원 해당여부 심의의 교직원복무심의회에서 쇠망치 등으로 학생들을 폭행한 것을 판단할 때 교육청에서 확보한 이 사건 증거품(첨부서류 2번) 체벌도구1. 망치, 체벌도구2. 부러진 배드민턴 라켓대(길이 약 42cm, Y자넓이 13.5cm), 체벌도구3. 각목(길이 약 37cm, 두께 2cm, 넓이 3cm)으로 청구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였다는 당시 학생들의 폭행일시, 장소, 폭행정도가 명시된 관련자료

㉕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임 증거자료로 교직원복무심의회에 제출한 2009. 2. 24.자의 '교사 ◇◇◇이 사용한 체벌사용도구'의 그 증거사진 원본과 실물소지 및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관내역에 관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조사자료와 정보일체

㉖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시 교직원복무심의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의결 요구) 제1항 제5호.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일체

㉗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시 교직원복무심의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의결 요구) 제1항 제5호. 혐의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일체

㉘ 청구인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시 교직원복무심의회에 제출한 「교육공무원징계령」 제6조(징계의결 요구) 제1항 제4호.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에 대한 정보일체

㉙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임 증거자료로 교직원복무심의회에 제출한 2009. 2. 19.자 ——— 문답서에서 '3학년 ▲▲▲ 학생이 수업시간에 망치로 맞았다' 하였으나, '추후 사실 확인하여 ○○○○○청에 보고할 예정임'의 문답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조치한 자료

㉚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임 증거자료로 교직원복무심의회에 제출한

2009. 2. 19.자 ——— 문답서에서 ———이 학생부실에서 확보한 증거품으로 학생을 폭행하였다고 확인한 조사자료와 ———이 확보한 증거품의 보관에 대한 정보(문서)

㉔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임 증거자료로 교직원복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학부모 진정서의 제9번 ‘작은 망치를 수업시간에 가지고 들어가 체벌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공포심을 유발시켰고 맞은 학생은 심한 고통을 겪음’의 진정 내용에 관한 조사자료

① 청구인에 대한 징계해임 증거자료로 교직원복무심의위원회에 제출한 학부모 진정서의 진정요지와 ♥♥♥ 고충심사청구서의 청구의 취지에서 ‘교직원간에도 성추행, 폭력, 갖은 싸움, 동료교사 괴롭힘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행태를 하였다’에 관한 조사자료

㉓ 청구인에 의해 폭행당하였다는 여자 교감의 강제추행 사실과 관련한 자료 및 증거일체

㉒ ○○○○○청의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20명에 대하여 당시 ○○○학교 재학상황과 교육청에서 확보한 이 사건 증거품 체벌도구1. 망치, 체벌도구 2. 부러진 배드민턴라켓대(길이 약 42cm, Y자넓이 13.5cm), 체벌도구3. 각목(길이 약 37cm, 두께 2cm, 넓이 3cm) 등으로 위 학생들이 폭행당하였다고 확인된 개개인에 대한 조사자료와 정보일체

○ 2009. 3. 26.자 ○○○학교 학생에 대한 폭력 관련 심의대상자(교사 ◇◇◇) 부적격교원 해당여부 심의의 교직원복무심의위원회 회의록

㉑ 부적격교원 해당여부에 대한 법령위반사항의 조사여부와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유무와 그 조치에 대한 결과의 정보(문서)

(3) 위와 같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

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 민원조사 내용에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의 면담 등을 통해 민원내용 및 개인신상정보 등이 나와 있으므로

①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내용은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6호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위반되므로 비공개결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공무원 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4)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이 비공개 내용 및 사유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앞서 살펴본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목록의 16개 항목에 대해 그 해당 항목이 피청구인이 거론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와 근거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도무지 알기 어

려워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위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어느 항목의 정보가 어느 사유에 의해 비공개되는 것인지 확인할 수도 없다고 보여지며,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비공개 사유와 근거로 제시한 위와 같은 내용은 위 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

(5) 비록 청구인이 자신의 해임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들이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나, 재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정보요청한 정보들이 위 법상 비공개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피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 공개대상 목록의 항목별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인지,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지를 먼저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거나 존재하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 정보가 위 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해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를 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하는 이유는 피청구인이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비공개 내용 및 사유가 개괄적이므로 위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목록별로 공개대상인지 비공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들어서 다시 판단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며, 또한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용취지 및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되, 다만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위 정보공개청구 목록별로 각각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을 명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기로 한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